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66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림피스킨병의 가축전염병 등급 조정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2. 28.

다. 회 부 일 : 2025. 3.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전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격리·이동제한·살처분, 관련된 사람, 차량 등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 등의 조치,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등 방역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림피스킨병은 침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고 소에서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2023년 10월 국내 한우농장 사육소에서 처음으로 발생 이후 그해에 107건, 2024년에는 24건 발생으로 집계되는 등 현저히 발생률이 줄었으며, 백신접종에 의해 감염 및 전파 차단이 가능하고, 감염되더라도 폐사된 사례가 없고 감염된 소가 일정 기간 격리 후 회복되는 질병의 특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음.

통상의 제1종 가축전염병은 폐사율 혹은 전파율이 높거나 인수공통

전염병인 특징이 있는데 럼피스킨은 이런 특징이 없을 뿐 아니라, 해외 문헌 및 전문가 의견처럼 적절한 예방접종과 농장 내 흡혈 곤충 방제와 소독, 감염된 소의 한정된 격리 등을 통해 질병 확산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브루셀라병 또는 결핵병과 같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병으로 제도개선해야 한다는 농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축산발전협의회,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게 되면 가축,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발생 농장 반경 5km내 방역대에 사육되는 모든 소의 이동제한, 가축시장 폐쇄 조치, 축산농가 모임 및 행사 금지, 축산물의 부정적 인식 확산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호소하고 있음.

이에 럼피스킨 관련 그간의 방역조치를 통해 확인된 질병 특성, 발생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효과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한 질병으로 정부가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정부 주도의 질병 관리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나목).

Ⅲ. 검토의견

1. 림피스킨병의 가축전염병 등급 조정

현행법은 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¹⁾

개정안은 동 전염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팅병, <u>리프트게곡열</u> , <u>림피스킨병</u> ,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팅병, <u>리프트게곡열</u> ,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

1) 림피스킨병은 침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고 소에서만 감염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감염된 소에서는 피부·점막에 수많은 작은 결절 생성, 우유 생산 급감, 가축손상, 유산 등의 증상이 나타남

현행	개정안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u>큐열</u>,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溝疫),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생략) 3. ~ 8. (생략)	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 ----- ----- ---- <u>큐열, 림피스킨병</u> ---- ----- ----- ----- ----- ----- ----- ----- ----- ----- ----- ----- ----- ----- ----- ----- ----- 다. (현행과 같음) 3. ~ 8.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범위의 구분 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직접 제1종, 제2종, 제3종 가축전염병을 각 질병명으로 열거하여 구분하고 있으며,²⁾³⁾ 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가축전염병 구분 】

구 분	세부질병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게곡열, 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 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 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 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 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溝疫),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 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 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부저병(腐蛆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2) 이기숙·김민호, “가축전염병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2023. 6.

3)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양상 등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기준이 불명확한 제1종~제3종 가축전염병 분류체계 및 방역조치가 지속되고 있는바, 치명률·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1종~제3종 가축전염병의 정의를 신설하고 새로운 분류 기준에 따라 법정 가축전염병을 재분류하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가축전염병은 신규로 추가할 예정이라는 입장임.(농림축산식품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 2025. 3. 5. 발제)

제1종 가축전염병은 일반적으로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빠르므로 ① 농장 전체 또는 양성축에 대한 살처분, ② 예방적 살처분, ③ 발생·역학 농장 관련 이동제한 등의 방역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취하게 되는 ① 농장 전체 또는 양성축에 대한 살처분(주로 양성축 살처분) 명령, ② 발생·역학 농장 관련 이동제한(사람의 이동제한은 제외) 등의 방역 조치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축산 농가에 보다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조치임.

【 현행 법령상 가축전염병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방역조치 】

방역조치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3조의4 중점방역관리지구	○(가능) * AI, ASF 관련 운영중	×(해당규정 없음)	×(해당규정 없음)
제14조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의무) - 시·도 가축방역 기관장, 민간 병성 감정기관장, 가축 전염병 연구·검사 하는 기관의 장에 게 의무 부여	○(의무) - 시·도 가축방역 기관장, 민간 병성 감정기관장에게 의 무 부여	○(의무) - 시·도 가축방역 기관장, 민간 병성 감정기관장에게 의 무 부여
제17조제4항 방제복 착용	○(의무)	×(해당규정 없음)	×(해당규정 없음)
제19조제1항제1호 발생농장(역학포함)의 가축·오염우려물품 이동제한	○(가능)	○(가능)	○(가능) * 도축장 출하 또는 계 약사육농가로 병아리 입식시에는 이동 가능

방역조치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19조제1항제2호 발생농장(역학포함)의 사람 이동제한	○(가능)	×(해당규정 없음)	×(해당규정 없음)
제19조제1항제3호 방역대 내 이동제한, 소독조치	○(가능) * 방역대(관리·보호·예 찰지역) 및 역학관련 농장 등에 대해 이동 제한 등 조치	○(가능) * 방역대 이동제한을 하 는 경우는 거의 없음	×(해당규정 없음)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역학관련 이동제한, 매개체 관련 이동제한	○(가능)	○(가능)	○(가능)
제19조 제2항 지역단위 이동제한, 제3항 방목 사육제한, 제4항 위반시 영업정지·폐쇄명령, 제8항 위반행위에 협조한 가옥운송업자· 도축장 영업정지	○(가능)	○(가능)	○(가능)
제20조제1항 본문 발생 농장 살처분	○(의무) - 농장 전체 또는 양성축 살처분 * 고시, 위험도평가 등 에 따라 농장 전체 또는 양성축 살처분 여부 결정	○(의무) - 농장 전체 또는 양성축 살처분 * 고시 등에 따라 <u>주로</u> 양성축 살처분 실시	×(해당규정 없음)
제20조제1항 단서 예방적 살처분	○(가능)	×(해당규정 없음)	×(해당규정 없음)
제21조제1항 도태 권고 *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 된 가축에 대해 도축장 출하 권고 가능	○(가능)	○(가능)	×(해당규정 없음)
제52조의3 농장소유주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정보 요청	○(가능)	×(해당규정 없음)	×(해당규정 없음)

※ 주: 그 밖의 방역조치들은 가축전염병 등급(제1종~제3종)에 따라 방역조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통 방역조치이거나 특정 질병에만 적용되는 방역조치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렘피스킨병은 2023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생 후 2023년 107건, 2024년 24건이 발생하고 2025년 3월까지의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고, 백신접종 및 매개체(침파리·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에 의해 감염 또는 전파 차단이 가능하며, 감염되더라도 폐사율이 낮고 일정 기간 경과 후 회복되는 특성이 과학적으로 확인⁴⁾되었고, 추운 시기에 매개체가 사멸하므로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의 계절 특성상 렘피스킨병의 토착화가 어렵다⁵⁾는 입장임.

【 렘피스킨병 발생 및 전국 소 사육현황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3월
발생건수	107	24	-
발생두수(마리)	6,455	314	-
소 사육두수(마리)	3,990,365	3,854,262	3,800,515

※ 자료: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낙농육우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효과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한 가축전염병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1종 가축전염병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통하여 관리하는 것은 축산 농가에 대한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렘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이 아닌 제2종 가축

4) 참고자료1. ‘렘피스킨(LSD) 양성축 살처분 유예 위험도 평가 결과’ 참조

5) 참고자료3. ‘렘피스킨(LSD) 발생지도’ 참조.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발생하는 위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렘피스킨병이 토착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전염병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방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
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렘피스킨병의 분류를 제2종 가축전
염병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방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는 점,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질병 통제가 가능하므로 정부 주도 방역
에서 민간 자율 방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
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우낙농육우협회는 렘피스킨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닌 비교적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질병인바 백신 접종을
하면서 관리가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

1. 개요

□ LSD 양성축 임상증상 변화·항원 검출 양상 분석 등 위험도 평가를 통해 살처분 최소화 정책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필요

○ 양성축 살처분 유예·격리* 후 28일간 임상·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LSD 항원 음성) 이동제한 해제 조치(필요 시 1주일 간격으로 연장)

* 농장 4호 21두(한우 16, 젖소 5) : ❶ (대구 동구^{'24.11.25일 발생}) 한우 4두, ❷ (여수^{'24.12.8}) 한우 7두, ❸ (보은^{'24.12.3}) 한우 10두, ❹ (고흥^{'24.12.23}) 젖소 5두

2. 위험도 평가 결과

◆ 양성축은 일정기간 격리 이후 모두 치유(병원성 소실) 확인

※ 다만, 착유소는 한우·건유소에 비해 임상증상 발현 등 감수성이 다소 높다고 추정

◆ 살처분 유예에 따른 농장내·외 전파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

※ 다만, 매개곤충 활동이 저하되는 시기(11월~2월)인 점을 고려 필요

□ (한우) 대구 동구, 여수는 5주간, 보은은 7·10주간 임상증상 완화, 간헐적 항원 검출 양상을 보인 후 치유, 살처분 유예 적용 가능성 확인

* (무증상축) 대구 동구 4두, 여수 6두, 보은 9두, (증상축) 보은 1두, 여수 1두

○ 또한, 대구 동구 농가에서 이동제한 해제 이후 출하한 1두(38개월령 우) 도축 검사 결과('25.1.18),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1+B으로 판정

□ (젖소) 착유소(13두)는 기립불능 등의 임상증상을 보여 살처분 실시, 감수성이 다소 높다고 추정되어 살처분 유예 적용 제외 검토 필요

○ 그 외 무증상축(건유2·육성2), 증상축(건유 1)은 한우와 같은 양상을 보임

3. 향후 계획

□ LSD 양성축 위험도 평가 지속 추진('25년)으로 과학적 근거 축적

□ 감염후 치유개체에 대한 도축결과 등 사후 모니터링 지속 실시

[참고] 렘피스킨 살처분 유예 감염축 임상·정밀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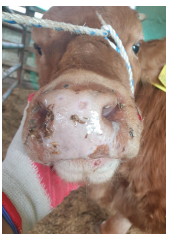
① 대구 동구(한우 4두, '24.11.25일 발생) ※ 11.28, 12.5, 12.12일 임상검사 결과, 이상없음

구분	6514 1 (63개월)	8125 2 (9개월)	4590 5 (16개월)	5495 0 (36개월)
11.25(월)	음성	타액	타액	음성
12.2(월) 1주차	음성	음성	음성	음성
12.9(월) 2주차	음성	음성	타액	타액
12.16(월) 3주차	음성	음성	음성	음성
12.23(월) 4주차	타액	음성	음성	타액
12.30(월) 5주차	음성	음성	음성	음성

② 충북 보은(한우 10두, '24.12.3일 발생)

구분	6960 5 (증상축, 9개월령)	6405 1 (4개월령)	5615 0 (5개월령)	1204 6 (6개월령)	8017 2 (7개월령)	3159 0 (8개월령)	3849 9 (8개월령)	0147 2 (56개월령)	8497 8 (68개월령)	9423 4 (92개월령)
12.3(화)	혈액·타액·조직	타액	타액	타액	타액	타액	타액	타액	타액	타액
12.9(월) 1주차	혈액·타액·조직	음성	타액	음성	음성	타액	타액	타액	타액	타액
12.16, 23, 30(월) 2-3.4주차	혈액·타액·조직	타액	타액	타액	타액	타액	타액	타액	타액	타액
1.6(월) 5주차	혈액·타액·조직	음성	음성	타액	타액	타액	타액	타액	타액	타액
1.13(월) 6주차	혈액·타액·조직	음성	타액	타액	음성	타액	타액	음성	타액	타액
1.20(월) 7주차	조직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2.3(월) 9주차	조직	-	-	-	-	-	-	-	-	-
2.10(월) 10주차	음성	-	-	-	-	-	-	-	-	-

○ 증상축(6960 5) 임상검사 결과

		⇒			⇒		
24.12.3일, 코잔등 궤양, 피부결절 확인			24.12.23일, 코잔등 가피 탈락, 용기 완화			24.12.26일, 임상증상 회복	

③ 전남 여수(한우 7두, '24.12.8일 발생)

구분	8398 5 (증상축, 4개월령)	4600 1 (43개월령)	2810 7 (28개월령)	0625 9 (65개월령)	1072 7 (28개월령)	8419 7 (27개월령)	6083 7 (32개월령)
12.9(월)	혈액·타액·조직	타액	타액	타액	타액	타액	타액
12.16, 23, 30(월) 1~3주차	타액·조직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1.6(월) 4주차	타액·조직	타액	타액	음성	음성	음성	음성
1.13(월) 5주차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 증상축(83985) 임상검사 결과



24.12.9일,
코잔등 궤양, 피부결절 확인

⇒



24.12.23일,
피부 결절부분 가피 부분적
탈락

⇒



24.12.26일,
임상증상 회복

④ 전남 고흥(젖소 5두, '24.12.23일 발생)

구분	8222 0 (73개월령, 건유소)	7534 9 (65개월령, 건유소)	8408 7 (57개월령, 건유소)	7327 2 (10개월령, 육성우)	4990 5 (6개월령, 육성우)
12.23(월)	-	혈액·타액	혈액	혈액	타액
12.30(월) 1주차	혈액·타액·조직	혈액·타액	타액	혈액·타액	음성
1.6(월) 2주차	혈액·타액·조직	타액	타액	타액	혈액·타액
1.13(월) 3주차	혈액·타액·조직	타액	음성	음성	혈액·타액
1.20(월) 4주차	타액·조직	타액	타액	타액	타액
2.3(월) 6주차	음성	타액	음성	타액	음성
2.10(월) 7주차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 증상축(8222 0) 임상검사 결과



24.12.30일,
피부결절, 다리부종, 고열,
식욕부진

⇒



25.1.2일,
다리부종, 피부결절 완화

⇒



25.2.3일,
임상증상 모두 완화

참고2

럼피스킨(LSD) 방역 해외사례

질병	전염병 등급	백신접종 (긴급, 예방적 구분)	살처분 여부 (감염축 / 동거축)
우리나라	-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 예방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	- 감염축 개체 살처분 * 필요시 살처분 유예 후 격리하여 관찰
일본	- 신고전염병으로 분류 * 가축전염병 28종, 신고전염병 71종	- (긴급백신) 국가단위가 아닌 지방(현)에서 백신 접종 판단, 농장반경 20km 이내 농장 접종 장려 * 24년부터 농림수산성에서 20만두분 비축중	- 살처분 대상 아님
대만	- 감·울·병 3종 중 감류 질병 * 감류: 구제역, HPAI 등 11종 포함	- 본섬: 발생시 긴급백신 - 금문섬: 1회/년 예방적 백신	- 감염축 개체 살처분
EU	- Category A (A·B·C 3종 중) * 즉각 조치 필요한 질병 * 2017년 이후 EU 발생 없음	- 회원국에서 EU로 제한적 긴급/예방적 백신접종 신청 후 가능 * (2023년) 불가리아, 그리스 백신 접종 종료	- 발생농장 살처분
호주	- Category 3* (1~4종 중) * 국내시장, 무역에 심각하지만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병 (ASF, LPAI, CSF, 등)	- 상황에 따라 결정 - 현재 허가된 백신 없음(백신 후보 평가중)	- 감염축 개체 살처분 - 필요시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살처분
미국	- 신고질병으로 구분 * 신고질병 66종, 모니터링 질병42종으로 구분 ※ LSD는 미국에 없는 외래질병 (FAD) 리스트에도 포함, - 외래질병 대응전략(2015)에서 ①살처분 ②살처분+긴급백신(살처분) ③살처분+긴급백신(도축) ④살처분+긴급백신(사육) ⑤비살처분+긴급접종의 선택 가능 - 질병원인체, 사람감염 여부, 원인체 통제 가능성, 경제손실, 긴급백신 이용가능성에 따라서 선택	- 긴급백신 사용가능 (LSD SOP, 2016)	- 살처분도 LDS 감염확산 통제에 중요 (LSD SOP, 2016)
세계동물보건기구	- 보고 질병	- 살처분과 예방접종을 병행하는 것이 차단방역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참고3

럼피스킨(LSD) 발생 지도

